| 통계법 (제33조 비밀의 보호)에 | ፠ ID | * LISTID | ፠ NO |
|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. | | | |

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

안녕하십니까?

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.

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「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조사는 제조업 분야의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.

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통계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,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·처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.

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16년 9월

국가인권위원회 ·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

| 연구기관 | ● 주 관: 국가인권위원회 ● 연구수행기관: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● 문의: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☎ 02)3277-2764 |
|------|--|
| 조사기관 | 조사기관: (주)아이알씨 (우)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-1 극동VIP빌딩 4층 담당자: 임용옥 차장 |

※ 응답자 기본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(연락처 등은 응답 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시 필요한 사항이며,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)

| 성명 | 연락처 | |
|-----|--------|--|
| 기관명 | 응답자 직책 | |

설문 응답 방법

- 해당되는 번호를 적거나 빈칸에 √를 표시하시고, 괄호 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써주십시오.
-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

※ 이 설문에서 지칭하는 "이주여성노동자"는 아래 체류유형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.

- ① E-9-1 (제조업)
- ② E-9-2~4 (농축산업, 건설업, 어업, 서비스업)
- ③ F-1, F-3 (방문동거, 동반)
- ④ F-4 (재외동포)

- ⑤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 (결혼이민)
- ⑥ H-2 (방문취업)
- ⑦ 미등록 (불법체류)
- ⑧ 기타의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

Section A 기본 인적 사항

1. 다음 칸에 해당하는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| _ 술생년노 ()년 근무 | 병력 ()년 |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| ① 정부위탁기관(외국인력지원센터, 외국인근로자② 비영리 민간단체(NGO) ④ 이주민공동체 ⑦ 기타 () | ·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) ③ 종교기관(가톨릭, 교회, 불교 등) ⑥ 노동조합 |
|--|--|
| 3. 귀하의 기관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제조업에 종 | 통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연간 전체 상담의 몇 %를 차지합니까? 약% |
| 4 제국사에 조사되는 시국사사 드리는 시합 모델 | 크 괴쉬 중은 괴쉬이 기계은 바므쳐 1께? |
| 4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어떤 문제로 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. | 도 위하 목근 위하의 기원들 경문합니까? 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 |
| 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. | |
| 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. ① 임금(임금, 퇴직금, 가산수당)체불 ③ 산재상담 | 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 ② 의료상담(병원연계, 의료통역 등) |

2. 귀하의 기관은 어떤 성격입니까? (

5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.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 에 기입해 주세요.

| 항 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전혀 그렇지 않다 | 응답란 |
|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1) 근로계약서는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, 서면으로 작성·교부되고 있다. | 1) | 2 | 3 | 4 | |
| 2) 제조업 분야의 근로조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. | 1) | 2 | 3 | 4) | |
| 3)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. | 1) | 2 | 3 | 4 | |
| 4)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다. | 1) | 2 | 3 | 4 | |
| 5) 야간근로(22시-06시)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다. | 1) | 2 | 3 | 4 | |
| 6)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다. | 1) | 2 | 3 | 4 | |
| 7)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 이상 보장된다. | 1) | 2 | 3 | 4 | |
| 8) 임금(퇴직금 포함)체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. | 1) | 2 | 3 | 4 | |
| 9) 생활환경이 양호한 숙소가 제공된다. | 1) | 2 | 3 | 4 | |
| 10) 식사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안다. | 1) | 2 | 3 | 4 | |
| 11) 한국인 근로자들과 대체로 사이좋게 지낸다. | 1) | 2 | 3 | 4 | |
| 12) 사용자와 관리자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된다. | 1) | 2 | 3 | 4) | |

6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.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.

| 항 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전혀 그렇지 않다 | 응답란 |
|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경우,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대 상에 포함된다. | 1) | 2 | 3 | 4 | |
| 2)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. | 1) | 2 | 3 | 4 | |
| 3)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. | 1) | 2 | 3 | 4 | |

| | 로 3가지만 순서대 ① 실업급여(구직; ② 출산전후급여 ③ 직업능력개발사 |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로 기재해 주세요. 급여)대상이 되지 못한다.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 나업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함 | 대상이 되지 된 | (1순위: | · 무엇이라고 생 , 2순위: | 각하십니까? 우산 , 3순위: | <u>!</u> 순위) |
|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C | ④ 기타(| 사이이저 미 이크 | | | , | | |
| 5 | ection C | 산업안전 및 의료 | | | | | |
| | | 당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 나고 보십니까? 가장 큰 (| | | | 로 처리하지 않는 | 경우, |
| | | | | (1순위: | | , 3순위: |) |
| | | 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! | | | | Lil | |
| | ③ 산재도 인정되 ⑤ 생계문제에 대 | 기 어렵다고 보아서 하 우려 때문에 | | | 주)가 원하지 않이 히거나 불이익 대 | | |
| | ① 기타 (|) | | ◎ – 1 · 1 · 1 | -1/1 1 2 -1 1 -11 | | |
| | 서대로 3가지를 기① 필요한 안전장② 작업에 사용되③ 작업에 사용되④ 작업에 사용되⑤ 신체에 무리가⑥ 짧은 시간에 많⑦ 한국말을 잘 일⑧ 기타 (| 비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는 기계나 기구에 안전설비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법을 는 약품이나 기타 화학물질 가는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받은 양의 일을 해야 해서 나는 아들지 못해서 | 에 가 되어 있지 : 잘 몰라서 !의 유독성으로 를 지속적으로 | (1순위: 않아서 인해 반복해서 | , 2순위: | , 3순위: |) |
| 10. | | =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아 , | | | 경우, 그 이유는 ! | 무엇이라고 보십니 | - 까? |
| | ③ 병원에 갈 시간 | (, , 나 건강(의료)공제에 가입! <u>난</u> 이 없어서 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| , , 되어 있지 않아 | 4 | 병원비 부담이 걱 사용자가 보내주지 기타 (| | |
| S | ection D | 성차별, 모성보호 달 | 및 인권식태 | | | | |
| | | J. 1 E, - U = 3 | ~ | | | | |
| 11. | . 당신은 우리나라 |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 | 성노동자에 대 | 한 성차별 실 | 태는 어느 정도리 | 나고 보십니까? 구 | 하가 |

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.

| | | 성차별 심 | 각성 정도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|
| 항 목 | 전혀 그렇지 않다 | 그렇지 않다 |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 응답란 |
| 1)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적게 받는다. | 1) | 2 | 3 | 4 | |
| 2) 사업주가 임금, 휴가, 상여금 등에 한국인 여성근로자 보다 차별 대우를 한다. | 1) | 2 | 3 | 4 | |
| 3)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. | 1) | 2 | 3 | 4 | |
| 4) 여성은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잔업·특근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. | 1) | 2 | 3 | 4 | |
| 5) 사업주는 채용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. | 1 | 2 | 3 | 4 | |
| 6) 여성은 남성보다 퇴직·해고에서 차별받는다. | 1) | 2 | 3 | 4 | |

| 12. |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() ①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아니어서 ② 사용자가 최초 60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③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 출산전후휴가를 다 사용할 ④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⑤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해고될까봐 되 | 가서 수 없어서 | ·(90일) 이 | 상 사용하지 | 못했다면 , | 그 이유는 |
|----------|---|--|--|--|--|---------|
| | 6 법 제도를 몰라서7 기타(|) | | | | |
| 13. |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까? 응답란에 기재해 주세요. () | 는 인권 침히 | ዘ 심각성 정 | 도는 어느 수 | 수준이라고 성 | 생각하십니 |
| |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| ③ 심각히 | 하다 | ④ 매우 심 | 각하다 | |
| 14. |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와 관련하여 개선되어 | l0: 할 점은 | 무엇이라고 | l 생각하신L | -[까? | |
| | | | | | | |
| S | ection E 성희롱 및 성폭행 | | | | | |
| 15. |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 | 입해 주세요 | ₹. | | | 십니까? 귀 |
| | al n | 성희 전혀 | | 행의 심각성 | | 0.51.71 |
| | 항 목 | 심각하지 않다 | 심각하지 않다 | 심각하다 | 매우 심각하다 | 응답란 |
| 1) | 성적 언동을 동반한 성희롱 행위 | 1 | 2 | 3 | 4 | |
| | 성식 인공들 공반한 성의공 행위 | | | | | |
| 2) |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| 1) | 2 | 3 | 4 | |
| | | 1 | ② ② | 3 | 4 | |
| 3) |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| _ | _ | _ | _ | |
| 3) 4) |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 성폭행(강간) 행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: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합니까? 우선순위로 3가지 ① 피해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조언한다 ② 7 ③ 가해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④ 교 | ① ① ·· · · ·· ·· 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| ② ② *0 나 성폭형 주세요.(복수 위: , 덕극적으로 형 | ③ ③ ③ 3 3 5 5 6 6 5 6 6 7 7 7 7 7 7 7 7 7 7 | ④ (4) () (5) (4) (4) (4) (4) (4) (4) (4) (4) (4) (4 | |

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

| 18. |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| 경을 하는 이유 | 는 무엇이라고 보 | 십니까? 우 | ² 선순위로 2기 (1순위: | \지를 기재해 , 2순위: | |
|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① 임금 수준이 낮아서 ③ 근로시간이 길어서 | | 임금을 받지 못해서 하는 일이 위험해서 | | (1211 | , 2611 | , |
| | ⑤ 해고를 당해서 | 6 / | 사용자가 계약 연정 | s을 해주지 | 않아서 | | |
| | ① 임신, 출산을 해서 ⑨ 기타 (| (8) | 사업장에서 욕설, 두 | 무시, 성희롱 | ·, (성)폭행 등 I | 대문에 | |
| 19. |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| 경 제한 제도와 | 관련하여 개선되 | 어야 할 점 | 은 무엇이라고 | · 생각하십니? | 까?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C | vation C 74 TH III | ᅵᆔᆮᆌᆏᅚ | | | | | |
| 36 | ection G 정책 및 | ! 제도개선 저 | 개인 | | | | |
| 20. | 귀하는 이주노동자와 상담하. 우선순위로 2가지를 기재해 | , — | 위한 활동을 하면 | 서 어떤 점 | 이 가장 어려웠 (1순위: | 였다고 생각하(, 2순위: | |
| | ① 내담자가 본인의 근로조건 | | | | | | |
| | ② 상담원이 모든 것을 해결하 | | | | | | |
| | ③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화를 ④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 | | | 않을 때 | | | |
| | ⑤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한 사 | | | | 박할 때 | | |
| | ⑥ 근로감독관 및 공무원이 / | | • | | | | |
| | ① 근로감독관 및 공무원이 <u>-</u> ⑧ 내담자와 의사소통이 안 된 | | 무시알 배 | | | | |
| | 9 기타(| = -1 | |) | | | |
| 21. |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| 및 기본권 보장 | 을 위해 정책적으로 | 로 개선되어 | 야 할 점은 무역 | 것이라고 생각 호 (| 하십니까?) |
| | ①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강화 | — | | | | | |
| | ② 지원단체를 더욱 활성화하 | | — | O ALAL=110 | Lalel | | |
| | ③ 상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④ 사업주가 근로자의 인권 및 | | | | | h해야 한다. | |
| | ⑤ 사업주 및 이주노동자 모 | | | | | | |
| | ⑥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| · 활성화해야 한 | 다. | , | | | |
| | ① 기타(| | |) | | | |
| 22. | 그 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| | 기본권 보호를 우 | 해 개선되 | 어야 한다고 성 | 생각하는 점이 | 있으시면 |
| | <u> </u>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-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-